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13 선고 2021가단50650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지배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1. 6. 22.

판결 선고 2021. 7. 1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목록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14. 4. 12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약정을 5,277,1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277,120원 및 이에 대하여
이 사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10523 양수금 사건 청구를 하여 2018. 5. 29. [D은 E 주식회사에게 26,136,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]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F 명의 소유이다가 2014. 4. 1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2018. 9. 18.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다. F은 2014. 4. 12. 사망하였고, 피고와 D 등은 F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무자력인 D은 부친인 F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,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/6지분 가액인 5,277,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).

보건대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4. 4. 12.에 있었고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. 3. 26. 제기되었으므로,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(원고는

다른 일자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있다)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

판사신동호

별지